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025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4,496,000원(가산세 2,496,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1,209,600원(가산세 9,6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604,800원(가산세 4,80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B유한회사로부터 [redacted]시 C 외 1필지 토지(3,987㎡)와 그 지상 건물(1,067.1㎡)을 6억 원에 매수하여 2018.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8. 6. 1.부터 단무지 등을 제조하고자 하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세 12,0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을 경감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 8. 9. 위와 같이 경감해 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취득세 14,496,000원, 지방교육세 1,209,600원, 농어촌특별세 604,800원)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과세예고 하였고, 2019. 10. 9. 위 과세예고대로 세액을 확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0. 1. 6.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 1. 20.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 준비를 마친 뒤 2018. 11.부터 2019. 2.까지 4개월 동안 공장을 임시 가동했으나, 기계설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기술자를 찾지 못해 기계 가동을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산물 출하를 위한 선별, 포장 작업은 계속 하였고 보관 창고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적어도 일부나마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세액은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긴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제1호).

이때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추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2018. 5. 31. 피고에게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2018.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단무지 등을 제조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2018. 7. 7.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증숙고구마, 방울토마토말랭이 등을 제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8. 9. 14. [redacted]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11.부터 2019. 2.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1,745kwh~3,605kwh의 전기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월 평균 22.5시간 전기 사용) 요금체납으로 2019. 2. 12.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었고, 2019. 3.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3) 피고가 2019. 8.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출입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주위에 빈 상자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으며, 공터에 잡초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무성하게 자라있는 등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로 보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단무지 등 농산물을 제조할 예정이라고 하며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넘게 지나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기재했던 농산물 제조를 하지 못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8. 11.부터 2019. 2.까지 약 4개월간 월 평균 22.5시간의 매우 적은 시간 동안만 전기를 사용하며 기계를 시험가동 하였고(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직후인 2018. 6.부터 2018. 10.까지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마저도 2019. 2.경 요금 체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당한 후 가동을 중단한 채로 방치하였다(원고는 기계를 제대로 다루는 전문가를 찾을 때까지만 기계가동을 일시 중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국내 업체가 제조·판매한 기계 설비를 조작하는 기술자를 1년이 넘도록 찾지 못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진지하기 노력을 했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③ 원고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오이 등 농산물 출하를 위한 선별, 포장작업을 하였고 임시 보관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오이를 재배해 왔고 수확한 오이를 선별·포장하는 작업도 별도의 장소에서 해왔던 원고가, 갑자기 경작지에서 약 18km 떨어져 있고 아무런 선별·포장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굳이 오이를 가져가서 선별, 포장작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농산물 선별, 포장작업 및 보관을 위해서도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전기 사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공장가공이 중단된 2019.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전기 사용량은 계속 0이었다.

④ 2018. 9.경, 2019. 6.경, 2019. 8.경 시기별로 이 사건 부동산 앞을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상자로 추정되는 물체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고, 건물에 진입하는 도로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었음을 시사한다(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되던 2016. 3.경 및 2020. 4.경 촬영된 사진에는 도로에 잡초도 없고 상자도 잘 정리되어 있는 등 위 시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고구마 가공 등을 할 수 있는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장소에서 농산물을 제조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도 없었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취득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1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끝.